
2019년도 행정시 읍·면 (한림읍 · 표선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공개)

2019.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범위 및 기간	1
3. 감사단 편성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1. 제주시 한림읍	2
2. 서귀포시 표선면	5
III. 지적사항 총괄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8
1. 지적사항 총괄	8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9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치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서 행정시 2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회계분야 집행 적정성 여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
-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 제시로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2.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 감사대상: 2개 읍면(제주시 한림읍, 서귀포시 표선면)
- 감사범위: 2017. 9. 1. 이후 업무 추진사항 전반
- 감사기간: 2019. 7. 10.~7. 23.(10일간, 각 5일) ※ 예비감사: 7. 5. ~ 7. 9.(3일간)

3. 감사단 편성

- 감 사 단: 행정감사팀장 등 7명

제주시 한림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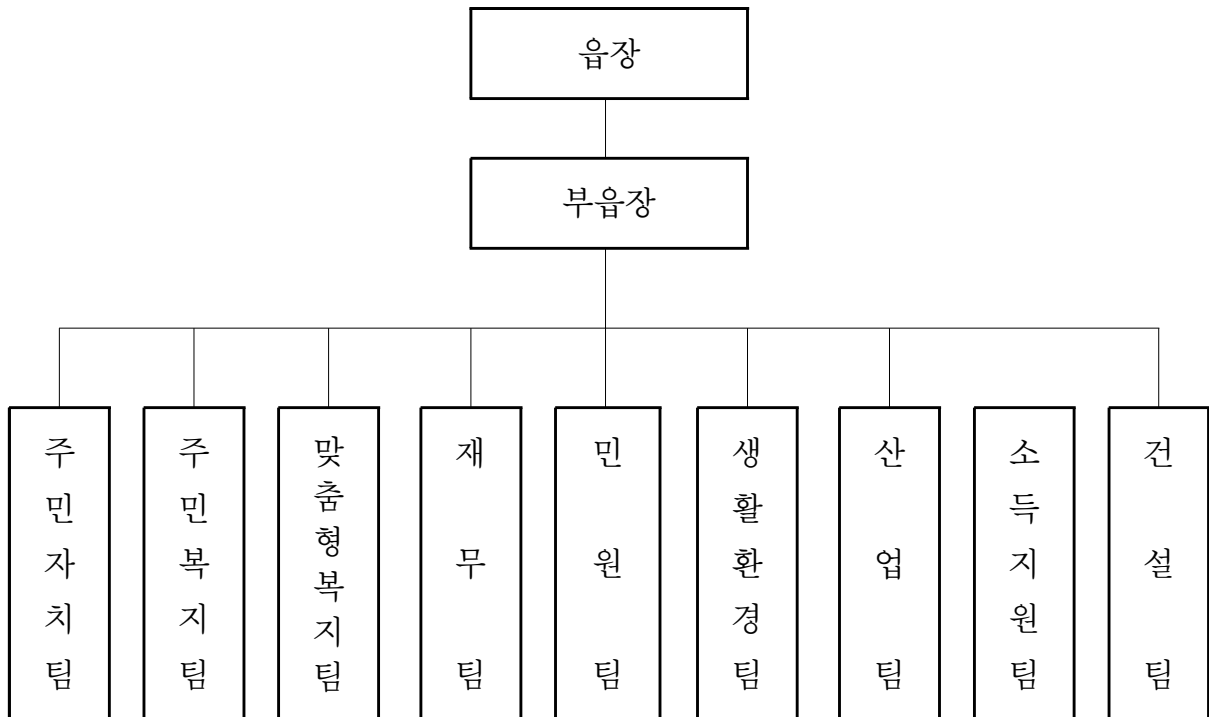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가. 연혁

- 1935. 3. 15. 전라남도 영 제7호로 구우면을 한림면으로 개칭
- 1946. 8. 1. 제주도 승격에 따라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으로 개칭
- 1956. 7. 8. 법률 제393호로 한경면을 분리시키고 읍으로 승격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으로 행정체계 개편

나. 기구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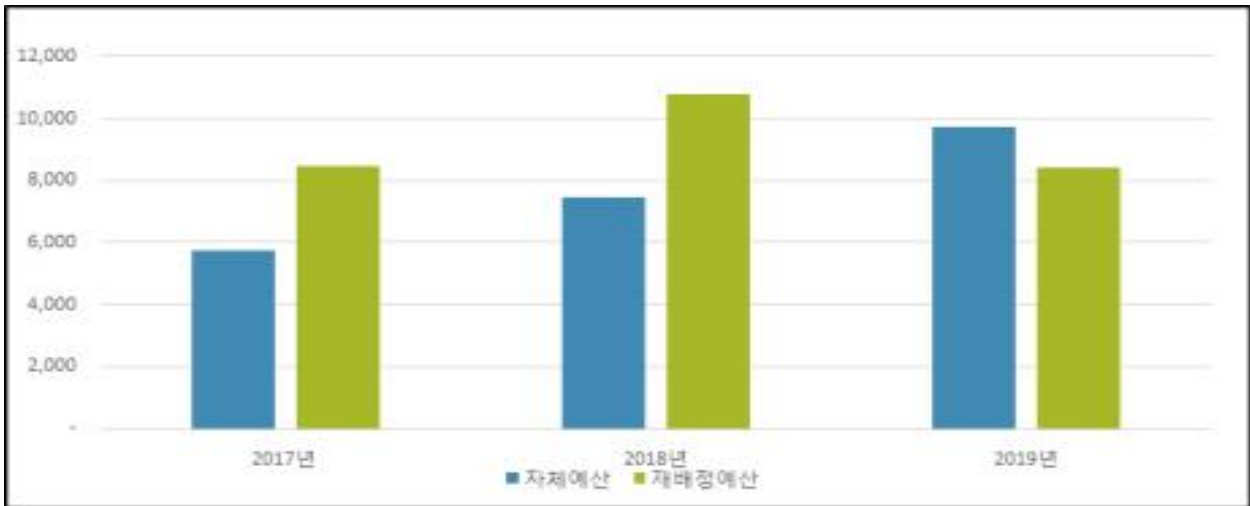
- 기 구: 읍장 · 부읍장 · 9팀



○ 정·현원 현황

구분	합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59	47	1	10	12	13	11	12
현원	56	45	1	10	19	6	9	11
과부족	△3	△2	-	-	7	△7	△2	△1

2.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자체예산	5,768	6.60	7,460	29.3	9,714	30.2
재배정예산	8,449	48.42	10,786	27.66	8,440	△21.74

주: 2017년~2018년은 최종예산, 2019는 당초 예산, %는 전년대비 증가율

3. 주요업무

팀명	주요 업무
주민자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운영 지원 ○ 이행정 운영 지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
주민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아동복지 관련 업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신청·접수·구호 등 주민복지 및 보훈업무
맞춤형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추진 ○ 민·관협력 활성화 및 복지자원 관리 ○ 지역보호체계(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재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관리
민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제증명 등 민원발급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및 녹지공간 조성, 야생동물 관련 업무 ○ 폐기물 처리시설(비양도) 운영·관리
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화훼특작·채소류·감귤 등 농업진흥에 관한 사항
소득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초지관리·마을공동목장 등 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수산증식·해양개발·어선안전 등 수산 진흥 및 해수욕장 관련 업무
건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개선, 가로등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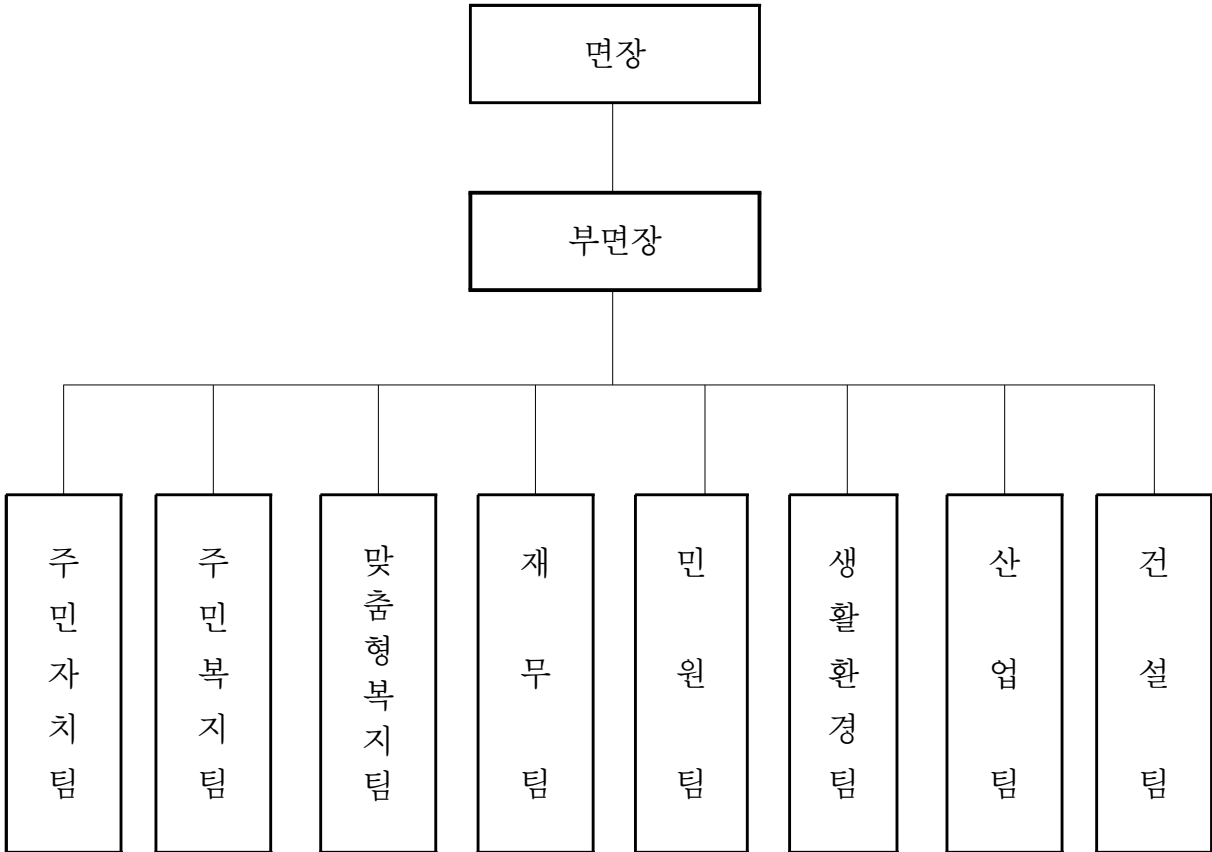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가. 연혁

- 1935. 전라남도 동중면을 표선면으로 개칭
- 1946. 8. 1. 제주도 승격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으로 개칭
- 1981. 4. 18. 면사무소 신축 이설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서귀포시 표선면으로 행정체계 개편

나. 기구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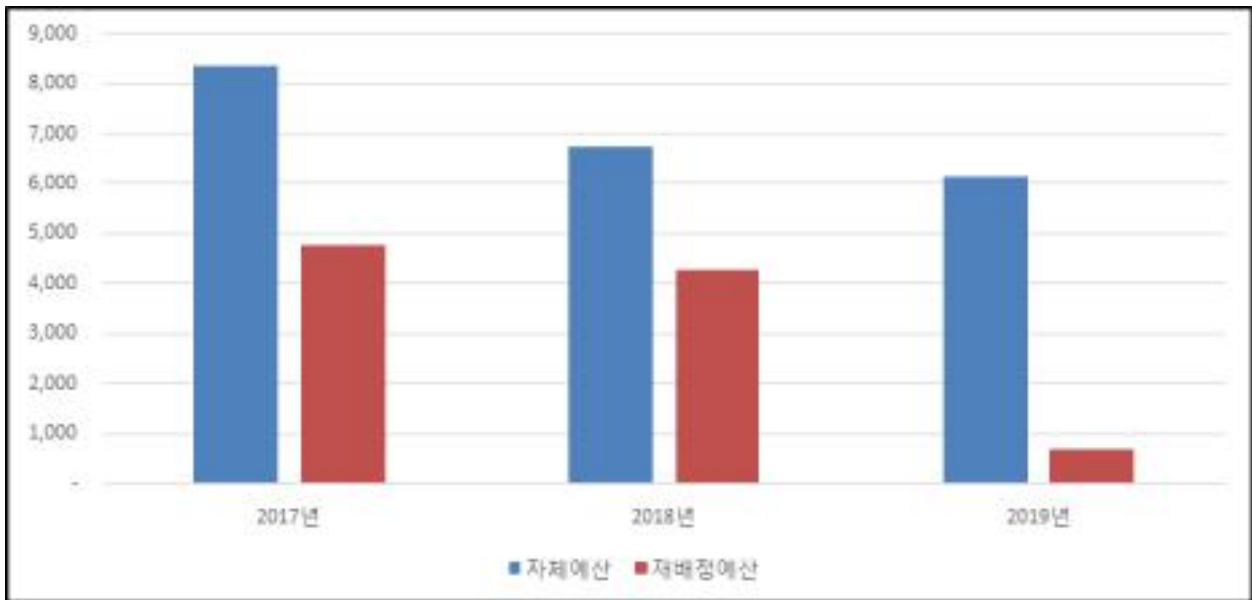
- 기 구: 면장 · 부면장 · 8팀



○ 정·현원 현황

구분	합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52	38	1	9	9	12	7	14
현원	49	36	1	11	11	8	5	13
과부족	△3	△2	-	2	2	△4	△2	△1

2.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자체예산	8,357	△16.69	6,727	△19.51	6,124	△8.96
재배정예산	4,759	11.8	4,282	△10.03	698	△83.69

주: 2017년~2018년은 최종예산, 2019는 당초 예산, %는 전년대비 증가율

3. 주요업무

팀명	주요 업무
주민자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문화·관광·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리행정 운영, 각종 단체운영 지원으로 열린 소통행정 실현 도모
주민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조건 완화에 따른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 노인 빈곤 해소와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맞춤형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다양한 지역자원 활성화로 어려운 이웃찾기 및 도움활동 전개 ○ 희망나눔 표선 2.0 캠페인 추진 ○ 행복나눔 희망뱅크 사업 활성화로 기부 문화 정착
재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 ○ 체계적 조사 및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
민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 발급업무 ○ 유기한 민원 처리 등 친절·신속한 민원실 운영 추진 ○ 민방위 관련 업무
생활환경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및 청결한 클린하우스 운영 ○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로 아름다운 표선면 조성
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영세농 배려 농정정책 추진 ○ 직불제 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산불, 해수욕장 관리 등 해양·산림 업무 추진
건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지역주민 현안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도모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부과	추급	회수 징수	기타	소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훈계 경고
40	26	9,780	-	14	-	1 (9,780)	-	13	16 (26)	16	- (24)	- (2)	1	8	1

※ 현지시정: 행정상 9건(시정 5, 주의 4), 재정상: 3,737천 원(징수 1,134, 반환 2,451, 회수 152)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등 공개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주민교육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위치	규모	주요시설	개소일	운영인력
한림읍 한림로 636	3층, 연면적 1,066.33㎡	- 1층: 다국어손바닥도서관, 공부방, 다목적실, 상담실, 위원장실 - 2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당 - 3층: 동아리실, 일반강의실, 컴퓨터연습실	2006. 7. 19.	1명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월별 각 자치위원별 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10.~7.16.) 중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위 관서의 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 상반기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에게 공고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에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월별 각 자치위원별 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표 2] 한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구분	이행여부			
	연도별		일시	방법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여부	2017년	하반기	2018. 1. 9.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광고)에 공고
	2018년	상반기	미심의	-
		하반기	2019. 1.15.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광고)에 공고
	2019년	상반기	2019. 7. 2.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광고)에 공고
심의결과 공개 여부	2017년	하반기	2018. 1.10.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광고)에 공고
	2018년	상반기	미공고	-
		하반기	2019. 1.22.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광고)에 공고
	도지사 보고 여부	2017년	하반기	2018. 1.12.
2018년		상반기	미보고	-
		하반기	2019. 1.22.	문서 시행
월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별 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내역 분기별 공개 여부		2017년	3분기	2017.11.30.
	4분기		2017.12.31.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2018년	1분기	2018. 4. 2.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2분기	2018. 7.16.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3분기	2018.12. 6.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4분기	미공개	-
	2019년	1분기	미공개	-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 활동내용 등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되어 자치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정해진 시기에 주민에게 공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 「제주특별

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주민교육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위치	규모	주요시설	개소일	운영인력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표선면사무소 3층	213.38㎡	- 다목적실 1실, 배움터 2실	2006. 8. 16.	1명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2. 주민자치위원 필수교육 이수 미 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 △△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이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 △△이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10.~7.16.) 중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위 관서의 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기가 2년인 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한 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표선면 ○○○○○ △△ ■■■■이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고하면서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에 상반기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민에게 공고를 하면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을 같은 해 9. 25.에 한꺼번에 공개하였고, 같은 해 9월과 10월 위원회 개최 시 각각 작성한 회의록을 다음 달이 되어서야 공개하는 등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을 짧게는 1월에서 길게는 2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2019년의 경우에도 1월과 2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각 작성한 회의록을 짧게는 1월에서 길게는 2월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공개하였다.

[표 2]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구분	이행여부		
	연도별	일시	방법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 도지사 보고 여부	2017년	하반기	2018. 1.22.
	2018년	상반기	미보고
		하반기	2019. 1.3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여부	2017년	- 1월~8월: 2017. 9.25. - 9월(9.11. 회의): 2017.10.19. - 10월(10.18. 회의): 2017.11.20. - 11월~12월: 2018. 1.29.	홈페이지 공개
	2018년	- 1월~9월: 해당 월 공개 - 10월~11월(10.18. 11.23. 회의): 2018.12. 5. - 12월(12.19. 회의): 2019. 1. 8.	홈페이지 공개
	2019년	- 1월(1.23. 회의): 2019. 2. 8. - 2월(2.13. 회의): 2019. 3. 5. - 4월(4.11. 회의): 2019. 5. 1. - 5월(5.14. 회의): 2019. 6. 4. - 6월(6.19. 회의): 2019. 7. 1.	홈페이지 공개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을 지역주민들이 제때에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주민자치센터 개설·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는 자치센터에서 자체 개설·운영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표선면 홈페이지(<https://seogwipo.go.kr/local/pyoseon/main.htm>)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¹⁾(www.jeju.go.kr/jumin/index.htm)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모든 정보(주민자치센터 현황 소개, 센터별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공지사항 및 수강생 모집정보 등 공지사항, 토론평 등 참여마당)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 반기별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따른 홍보를 하면서 [표 3]과 같이 표선면 홈페이지(공지사향)에는 매번 게시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게시 명세

게시 정보 명	관련 홈페이지 게시 여부	
	표선면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2017년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2018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2018년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2019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었으므로 위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이 위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게 하는 등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며, 수강생 모집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강생 모집 정보를 관련 홈페이지(표선면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홍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예산 재배정제도 운용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제주시(기획예산과), 서귀포시(기획예산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에서는 2019. 5. 9. “예산 재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²⁾을 수립하여 전 부서(행정시 포함)에 통보하고,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2) 2019. 5. 9. 공문(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6648호)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예산 재배정제도 운용 기본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본방침으로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재배정 여부를 명문화하고,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판단 후 예산편성 방향을 결정하며, 도 본청에서 재배정하는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임부서에 편성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읍면동 재배정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능력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19. 5. 9. “예산재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전부서(행정시 포함)에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행정시로 하여금 별도의 재배정사업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재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시에 공문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수립·시행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 행정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통보된 공문에 따라 재배정사업 감축을 위한 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7.10.~7.23.) 중 2018년도 예산을 표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행정시로부터 감사대상 기관(제주시 한림읍, 서귀포시 표선면)에 재배정된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 자체예산 67억 원에 재배정예산 42억 원이 집행된 반면, 제주시 한림읍의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74억 원인데 비해 재배정예산은 이 보다 30억 원 많은 10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재배정예산 중 사무위임 근거 없이 사업비가 재배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18년 읍면 자체예산 및 재배정예산 명세

(단위: 백만 원)

구분	읍면·자체예산	재배정예산		
		소계	위임된 사무	위임되지 않은 사무
제주시 한림읍	7,460	10,786	6,169	4,617
서귀포시 표선면	6,727	4,282	1,645	2,637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조례나 규칙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 없는 사업비가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례가 제주특별자치도(본청)보다는 행정시에서 재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18년 사무위임 근거 없는 사업비 읍면등 재배정 명세

(단위: 건, 천 원)

구분	예산편성부서	사업내용	재배정건수	재배정액	집행액
		합계			
한림읍		합계	156	7,254,305	5,797,751
		소계	79	4,617,256	3,378,504
	도 문화정책과 등 6개부서	·작은영화관 설립, 한림종합운동장 재도장 공사 등	10	1,108,770	172,835
제주시	생활환경과 등 18개부서	· FTA기금 지원 사업 보조금 등 농업 보조금 · 재활용품 수거원 인부임 등 환경 관련 인부임 ·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공사 ·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등	69	3,508,486	3,205,669
		소계	77	2,637,049	2,419,247
표선면	도 4.3 지원과	4.3길 환경정비 인부임 등	4	5,290	4,66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등 18개부서	· FTA기금 지원 사업 보조금 등 농업 보조금 · 환경정비요원 대체인력 인부임 · 재활용도움센터 청결지킴이 인부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부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73	2,631,759	2,414,58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에서는 2019. 5. 9. “예산재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시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만

한 채 같은 해 7월 감사일까지 행정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읍면에 재배정 예산 사무 처리에 따른 인력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만 가중되면서 고유사무 처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 예산 재배정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재배정 받은 부서(읍면동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위임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재배정 받은 부서로부터 재배정 집행 불가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재배정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예산재배정 제도가 개선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 부서(행정시 포함)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등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은 재배정사업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위원회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시설비) 선정사업 외 신규 사업 임의 추진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표]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시설비)으로 총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주민참여예산(시설비) 편성 사업 추진 명세

연도별	합계	2017년	2018년
합계	20	11건, 1,005,500천 원 (명시이월 1건, 300,000천 원 포함)	9건, 1,000,000천 원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8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편성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 6. 28. 행정시 등에 시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등 차질 없는 추진 요청” 공문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하지만 사업추진 효과가 없거나 사업 추진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 등³⁾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변경 시행하도록 하고, 2017년 주민참여 예산부터는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변경 추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⁴⁾.

따라서 위 관서에서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시설비)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업을 변경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시설비)을 편성하면서 당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11개 사업에 1,005,500천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별표] “주민참여예산 사용 부적정 명세(2017-2018)”와 같이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 ▲▲▲▲▲ 꽃 식재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 변경 심의를 받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위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등 2017년과 2018년에 총 10건 233,889천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주민

3) 변경절차: 지역회의 심사 → 조정협의회 심사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결정 → 추경예산 반영

4) 2017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제주시 5건 255백만 원, 서귀포시 4건 270백만 원 등 총 9건 525백만 원이 심의절차를 거쳐 변경되었음

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 변경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추가 시행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사업 변경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매년 본예산 또는 재배정 예산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기념품 구입, 수첩 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나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 또는 위문 등에 따른 경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관내 대청결운동 등 봉사활동 참여자를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격려 또는 위문 성격의 예산집행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표]와 같이 총 10건 계 4,264천 원 상당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다.

[표] 표선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명세(2017년 9월~2019년 6월)

(단위: 천 원)

집행일시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과목	정당집행과목
합계	10건	4,264		
2017. 9. 29.	2017년 9월 대청결운동 참여자 식사비	254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7. 10. 23.	표선 백사 봉사활동 참여자 식사비	135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7. 10. 30.	2017년 10월 대청결운동 참여자 식사비	596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7. 11. 13.	표선 백사 봉사활동 참여자 식사비	160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8. 2. 19.	폭설에 따른 표선면 주요도로 제설작업 참여자 식사비	1,000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8. 10. 11.	제25호 태풍 북상에 따른 사전예찰 및 피해복구 참여자 식사비	1,130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8. 12. 6.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예찰활동 식사비	200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9. 4. 9.	표선 백사 봉사활동 참여자 식사비	168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9. 4. 24.	하우스화재피해농가 인력지원 참가자식사비	240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2019. 5. 21.	해안번 쓰레기처리 인력지원 참가자 식사비	381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자료 :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태풍 사전예찰 및 피해복구’ 등은 면 주관 행사로서 행사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급식 제공을 하였고, 재배정된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재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급량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 관서에서 주장하는 ‘태풍 사전예찰 및 피해복구’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 재배정 공문 내용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활동에 대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표선 삼무로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관내 우범 및 보행이 불편한 지역의 도로에 LED가로등 설치(범죄 없는 길), 보행환경 개선(장애 없는 길),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쓰레기 없는 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선 삼무로(三無路)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2017년 세출예산에 총사업비 1,000,000천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였다.

[표 1] 2017년 표선 삼무로(三無路) 조성사업 세출예산 편성 명세

(단위: 천 원)

사업명	합계	세출예산 편성 과목		
		시설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표선 삼무로(三無路) 조성사업	1,000,000	970,000	10,000	20,000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8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편성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년에 표선 삼무로(三無路)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표 2]와 같이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20,00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예산 중 8,243천 원을 2017. 9. 27.과 같은 해 11. 9. 두 차례에 걸쳐 위 사업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성격의 ‘대중교통 체계개편 홍보용 시트지 및 현수막, 어깨띠 구입’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2] 표선 삼무로 조성사업 재료비 집행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세부사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적요	집행액	집행 잔액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재료비 재료비 (206-01)	표선사무로 조성사업	20,000	합계	8,243	11,757
				대중교통체계 개편 홍보용 시트지 구입	7,843	
				대중교통체계 개편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어깨띠 구입	400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예산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예산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등 회계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세출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앞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여성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인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17. 2. 3. “2017년 수의계약 운영 계획 알림” 공문(총무과-6705호)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개선, 지역 영세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업체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해소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사의 1인 소액 수의계약은 동일업체의 경우 연 3회 이하 또는 누적금액 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에는 연 2회 이하 또는 누적금액 8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⁵⁾

따라서 위 관서에서 소액 수의계약(1인 견적)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서귀포시에서 통보한 수의계약 운영계획에 따라 특정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총 231건의 공사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이 중 96건 계 2,181,577천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별표] “동일 업체 연 3회 초과 또는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연 2회 초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2017년~2018년)”와 같이 특정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적게는 연 4회에서 많게는 8회까지, 여성기업과는 적게는 연 3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6. 11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2017. 1. 1.부터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소액수의계약 금액 및 횟수에 대하여 공사의 1인 소액 수의계약은 동일업체의 경우 연 3회 이하 또는 누적금액 6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에는 연 2회 이하 또는 누적금액 8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서귀포시로부터 통보받은 ‘수의계약 운영계획’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1인 소액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의 경우 연 3회(누적금액 5천만 원) 초과, 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 연 2회(누적금액 8천만 원)를 초과하여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앞으로 1인 소액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서귀포시로부터 통보받은 ‘수의계약 운영계획’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은 특정 동일업체와 수회에 걸쳐 1인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 공공시설 등 신·개축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경로당, 복지회관, 공동주택 등 시설 신·개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한림읍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국책사업 피해지역 등에 대한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시설신축 및 장비지원은 정액지원, 소규모 학교육성 공동주택 신축은 60% 지원 등 사업 유형에 따라 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⁶⁾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6) 피해지역 이외의 경우 시설 신축은 70%, 장비 등 물품구입은 50% 등을 적용하고 있음

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⁷⁾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의9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관리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부동산과 그 종물을 포함한 중요재산⁸⁾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대여·담보의 제공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은 사업결정 내용대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⁹⁾.

또한 같은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집행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한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 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¹⁰⁾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17. 3. 27. 행정시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공문(예산담당관-3981)을 시행하여 지방보조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중요재산 지정 및 내구연한은 보조금 결정 시 사업부서에서 명시하거나 별도 명시 없이 지원함

9)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 집행,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을 용도외 사용의 사례로 되어 있고, 단일 물품 1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입·출력하여 정산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한 재산은 반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10) 자부담이 50% 이하의 경우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계약법령에 따라 대행입찰 의뢰 추진하고, 수의 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가능함(장애인 또는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기등기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통보하였다.¹¹⁾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시 소유권 보전 등 부기등기를 한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기간이나 예산배분 등 집행계획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당초 교부한 사업의 용도 외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기간 중에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조속히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대장, 정산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7. 16.) 중 위 관서에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 복지회관, 공동주택 등의 시설 신·개축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 ㉠㉡㉢㉣ 중축사업의 경우

11) 제주시 기획예산과-5343(2017. 3. 29)호에 의거 전 부서에 시행하였으며, 중앙지원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 및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중앙지원 보조 사업에도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위 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 ㉡㉡㉡㉡ 증축에 따른 보조 사업이 완료되자 2019. 1. 5.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건축물 증축(36.94㎡) 여부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 여부 및 부기등기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걱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표 1] 2018년 ○○○○ ㉡㉡㉡㉡ 증축 사업비 집행·관리 명세

(단위: 천 원)

보조 사업자	사업장소	사업수행 기간	주요 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일 및 정산결과	부적정 내용
				합계	보조금	자부담			
○○○○ ◆◆◆◆ (대표: ●●●)	한림읍 ○○○○ ㉡㉡㉡	2018.2.1. ~ 12.31.	36.94㎡ 증축	79,509	79,509	-	77,173	2019.1.5. 적정	· 정산 후 2019. 1. 30. 건축물 대장 등록 · 등기부 등본 없음 · 부기등기 미 이행 · 정산 시 확인 미 이행

자료: 제주도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의 중요재산 대장에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36.94㎡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나. ●●●● ㉡㉡㉡㉡ 신축사업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 ㉡㉡㉡㉡ 신축에 따른 보조 사업이 완료되자 2019. 1. 22.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신축 건물 419.95㎡에 대하여 건물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으로 신축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등기 및 부기등기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걱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다. ●●● □□□□ 증축사업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표 4]와 같이 ●●●◆◆◆◆(대표 <<<)에 ●●● □□□□ 증축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 기간을 2018. 4.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기간이 종료된 2개월 후인 2019. 2. 28.이 되어서야 준공처리 하였고,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4] 2017년 ●●● □□□□ 증축사업비 집행·관리 명세

(단위: 천 원)

보조사업자	사업장소	사업수행기간	주요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일 및 정산결과	부적정 내용
				합계	보조금	자부담			
●●● ◆◆◆◆ (대표: <<<)	한림읍 ●●● △△△- △△	2018.4.19 ~ 12.31	269.36㎡ 증축	650,000	650,000	-	647,257	미실시	·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2019. 2. 28. 준공 · 2019. 7월 기준 건물 준공 후 5개월 경과시점까지 정산 미실시 · 2019. 2. 28. 준공검사 이후 복지회관 비품 등 48,206천 원 1인 견적 구입 등 용도 외 집행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 증축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표 5]와 같이 준공 이후인 2019. 3. 6. 식탁·식탁용 의자 등의 물품을 2천만 원 이상 구입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20,228천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3. 22.에는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주방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22,050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해 4. 17.에도 ●●●●에 CCTV 설치하는데 5,928천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 잔액 등을 이용하여 총 48,206천 원 상당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집행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재건축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보조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표 7]과 같이 준공 이후인 2018. 7. 30. 100만 원 이상의 동일 물품을 구매하면서 2인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1인 견적으로 마을회관 책장·주방 기구 등의 비품 구입하는데 16,700천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8. 29.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장비 구입 및 CCTV를 설치하는데 9,32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석재 조형물 설치비로 10,0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 잔액을 이용하여 총 4건 계 36,024천 원 상당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집행하였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7] 2017년 □□□□ 재건축사업비 용도 외 장비·물품구입 명세

(단위: 천 원)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건명	구입비	구입품목
합계	4건		36,024	
2018.7. 30.	◇◇◇ ◇◇◇ (대표: ◆◆◆)	●●●● 비품구입	16,700	· 3단책장, 주방기구 등
2018. 8. 29.	(주)○○○○○○○○ (대표: ○○○)	●● 방송장비 등 구입	2,234	· 방송용 앰프, 스피커 등
2018. 9.	□□□□ (대표: ☒☒☒)	●●●● CCTV 및 빔 프로젝트 구입	7,090	· CCTV, 빔 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등
2018. 12.	▲▲▲▲▲▲(주) (대표: ⊕ ⊕)	석재 조형물	10,000	· 석재 조형물 1식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의 중요재산대장에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400㎡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마. ○○○○ □□□□ 육성 주택공사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표 8]과 같이 ○○○○ □□□□ 육성 주택공사에 따른 보조

사업이 완료되자 2019. 7. 24.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신축 건물 588.72㎡에 대하여 건물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등기 및 부기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도 걱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 하였다.

[표 8] 2017년 ○○○○ □□□□ 육성 주택공사 사업비 집행·관리 명세

(단위: 천 원)

보조 사업자	사업장소	사업수행 기간	주요 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일 및 정산결과	부적정 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 ◆◆◆◆ (대표: ○○○)	○○○ □□□□- □	2017. 9. 1. ~ 2018.8.30.	588.72㎡ 신축	1,001,434 보조율 (6:4)	600,000	401,434	1000,980	2018.7.24. 적정	· 정산 후 2019. 8. 1. 건 물등기부 등본 등록 및 부기등기 · 2018. 4. 5. 준공검사 이후 주방비품 등 1인 건적으로 34,000천 원 용도 외 집행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 육성 주택 신축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보조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가 [표 9]와 같이 해당 건물이 준공된 이후인 2018년 4월경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물품을 2천만 원 이상 구매 하면서 입찰하지 않고 1인 건적만으로 34,000천 원 상당의 주방기구 등을 구입 하였다.

특히 위 보조 사업은 기준보조율이 60%인 반면, 공동주택 장비 구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50%이므로 10%의 자부담을 추가해야 하나 자부담 추가 없이 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만으로 위 주방기구 등을 구입하였는데도 걱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9] 2017년 ○○○○ □□□□ 육성 주택공사 용도 외 장비·물품 구입 명세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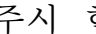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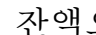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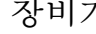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명	구입비	구입품목
2018년 4월	 (대표: )	주방기구 등 구입	34,000	· 싱크대, 신발장, 가스렌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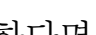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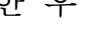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의 중요재산대장에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588.72㎡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당초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구입한 장비 등의 물품이 구입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신·증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입한 장비는 공사내역에도 포함이 가능한 사항이나 원가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준공 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신·증축한 에 필수 장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활용이 제한되므로 건물 신·증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비구입 내역을 공사내역에 포함할 수 있다면 해당 로 부터 장비구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증축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도록 하고,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 중요재산대장에 등록 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보조사업 계획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용도 외로 집행하거나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을 위배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은 마을 공공시설 신·개축 등의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따른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 ◆◆◆◆’ 사업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위 사업 보조사업자인 ○○◆◆◆◆(대표자 ■■■■)에 보조금으로 총 194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¹²⁾

[표 1] 2018년 지역균형발전사업 ‘○○○○ ◆◆◆◆’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원년도	지원 대상	지원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2018년	○○◆◆◆◆ (대표자 ■■■■)	○○○○ ◆◆◆◆	194 (민경 14, 민자 180)	- 전통다방 구성(간이무대, 커뮤니티카페) - 음악교육 프로그램 운영(악기연주자 양성) - 음악다방 운영(바리스타 양성)을 통한 부가소득 창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12)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정책기획관실과 제주연구원(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는 사업공모 및 컨설팅 지원, 한림읍은 보조 사업비 지원관리 역할을 수행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 내지 제25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행 관리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간, 기계·장비는 5년간, 시설 리모델링은 5년간 처분제한 기간으로 각각 설정하여 용도의 사용, 양도·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에서 2017. 3. 27. 행정시에 통보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공문(예산담당관-3981호) 내용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일 물품으로 1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 견적서를 징구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가 입·출력하여 정산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¹³⁾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13) 취득한 재산은 반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중요재산은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배분 등 집행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들을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7. 16.) 중 ‘○○○○ ◆◆◆◆’사업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 3. 28. ○○◆◆◆◆(대표자 ■■■)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같은 해 11. 16.에 건물 리모델링을, 같은 해 12월에는 관련 장비 구입 등 보조 사업이 완료되자 2019. 2. 18. 정산검사를 실시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비용 180,108천 원이 투입되어 해당 건물의 가치가 증가 되었으므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부기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걱정만 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2] 2018년 ○○○○ ◆◆◆◆ 사업비 집행·관리 명세

(단위: 천 원)

보조 사업자	사업 장소	사업수행 기간	주요 사업내용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일 및 정산결과	부적정 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 ◆◆◆◆ (대표자 ■■■)	○○리	2018.3.28 ~ 12.31.	리모델링 1식 및 장비 구입	180,108	180,108	-	180,108	2019.2.18. 적정	·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미 이행 · 물품 등 구입 시 수의계약 또는 1인 견적 구입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단일 물품 1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물품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4회에 걸쳐 메인스피커 등 29종 39,860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인 견적만으로 구입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표 3] 2018년 ○○○○ ◆◆◆◆ 사업 장비·물품구입 명세

(단위: 천 원)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품목	구입비	구입방법	정당구입방법
2018년 12월	●●●●●● (대표: ◆◆◆)	- 메인스피커, 앰프, 마이크, 레코드 등 24종	27,500	1인 견적 수의계약	G2B 이용 2인 이상 견적
	●●●●●● (대표: ◆◆◆)	- TV - 이동식 앰프	2,180 1,350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 (대표: ◆◆◆)	- 통기타	4,500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 (대표: ☒☒)	- 빔 프로젝터 - 노트북	2,530 1,800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금액 비교를 할 수 없어 구입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보조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부기등기 및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 중요재산대장에 등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 물품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 마을 포제단 건립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에 관내 ○○○ 마을 주민의 무사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한 〰〰〰〰〰〰〰〰 마을 포제단 건립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표 1]과 같이 ○○○○ ◇◇◇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였다.

[표 1] 〰〰〰〰〰〰〰〰 마을 포제단 건립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합계	보조금	자부담		
〰〰〰〰〰〰〰〰 마을 포제단 건립사업	○○○○ ◇◇◇ (대표: ●●●)	90,000	81,000	9,000	2018.2.~2018.12.	- 포제단 건립 1식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¹⁴⁾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단일 사업으로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 마을 포제단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에서 ○○○ 포제단(포제터) 정비 및 시설공사를 위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 공사의 예정지가 동일 장소이고, 공종 또한 단일공종으로 발주가 가능한 공사이므로 분할발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주시 소재 여성기업인 ●●●●●●(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 포제터 시설공사 45,519천 원, ○○○ 포제단 정비공사 29,796천 원 등 5천만 원 이하가 되게 2건의

14)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함

사업으로 분할하여 위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산검사 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표 2] ○○○○○○○○○○○ 마을 포제단 건립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공종별	계약일
		합계	보조금	자부담				
계		75,315	67,783	7,532	75,315			
○○○ 포제터 시설공사	포제단 건립 1식	45,519	40,967	4,552	45,519	●●●●●●●● (주)	석공	2018.3.21.
○○○ 포제단 정비공사	판석설치 및 겹담쌓기 외	29,796	26,816	2,980	29,796	●●●●●●●● (주)	석공, 조경	2018.6.22.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단일 사업으로 확정된 공사가 2건으로 분할되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고, 예산이 절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단일사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계약 체결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검토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마을 시설물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 사업 집행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보조사업 계약체결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해당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보조 사업자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계약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8. 5. 25. “○○○ ㉠㉠㉠㉠㉠㉠ 도장 및 방수공사” 보조 사업자인 ○○○ ㉠㉠㉠로부터 보조금 교부요청을 받아 같은 해 5. 28. 보조금 21,900천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같은 해 5. 29.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 하면서 위 공사는 예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이고, 방수 및 도장 공사에 해당 하므로 ‘도장공사업’ 또는 ‘방수공사업’ 업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도·소매 업종의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여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

[표 1] 2018년 ○○○ ㉠㉠㉠㉠㉠㉠ 도장 및 방수 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적합한 전문건설업종
				업체명	전문건설업 등록면허 (사업자등록번호)	
□□□ ■■■■■■■■■■ 도장 및 방수공사	도장 및 방수 1식	18,264	2018.5.29	○○○○○○○○○○ (대표 △△△)	없음 (645-14-00950)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공사를 하여 공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보조사업 계획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형성이 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의 경비와 자산 및 물품(비품) 취득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비품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내용에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구입 내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8. 5. 4. '☐☐☐☐ ○○○○○ 실시설계 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 보조사업자인 ☐☐☐☐ ○○○○○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표 2]와 같이 총 5개의 세부사업이 신청되었고, 이 중 마을회가 운영하는 카페(◆◆◆◆◆ ◆ ◆◆ ◆◆)에서 사용할 커피잔 등 카페용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사업계획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2] ☐☐☐☐ ○○○○○가 제출한 실시설계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 내용 중 사업비 집행 계획 명세

(단위: 천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	산출내역
계					26,303	
☐☐☐☐ ○○○○○ 실시설계 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	☐☐☐☐ ○○○○○	25,114	민간자본 사업보조	실시설계용역	3,540	돌담쌓기 등 2종 실시설계1식
				경관조명 설치공사	4,388	경관조명 설치 1식
				승차식 잔디깎이 물품구입	8,875	잔디깎이 구입 1식
				3인쇼파의 3종 물품구입	4,770	3인용 쇼파 등 3종 구입
				마을회 운영 카페용 물품구입	4,730	커피잔 등 카페용 물품 구입 1식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의 일부가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지원 용도와 다르게 구입할 수 없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등을 연찬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1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 해당 면허 등의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표 1]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9건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337,136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1] 주민참여예산 편성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명세(2017년~2018년)

(단위: 천 원)

연도	보조사업 명	통계 목	보조사업자	지원액			자부담 비율
				합계	도비	자부담	
합계	9건			374,650	337,136	37,514	
2017	표선면 문화예술티움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20,000	18,000	2,000	10%
	표선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청소년지도자협의회	20,000	18,000	2,000	10%
	성읍민속마을 안내판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읍1리마을회	33,000	29,700	3,300	10%
	성읍 전통 정원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읍1리마을회	99,606	89,646	9,960	10%
	하천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천리마을회	59,844	53,850	5,994	10%
2018	표선면 문화예술티움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20,000	18,000	2,000	10%
	표선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청소년지도자협의회	20,000	18,000	2,000	10%
	토산1리 마을 역사·문화 기록물 발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산1리마을회	85,600	77,000	8,600	10%

연도	보조사업 명	통계 목	보조사업자	지원액			자부담 비율
				합계	도비	자부담	
	토산1리 문화체험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산1리마을회	16,600	14,940	1,660	10%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계획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의 경우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면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하는 경우 단일사업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신청단계부터 이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8. 4. 9. ‘○○○○ ○○○○○○○ ○○○○’ 보조사업자인 ○○○○ ⅢⅢⅢⅢ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계약예정 업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견적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 7개의 세부사업 중 ▲▲▲▲▲와 ◆◆◆◆ 및 ●●●, ◆◆◆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부사업 내역이 [표 2]와 같이 ⅣⅣⅣⅣ에 따른

●●● 및 ■■■, ①①①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3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내역을 확인하였다면 동일한 ■■■■■에 대하여 3개 업체에 각각 ▽▽▽▽, ●●●, ■■■, ①① 등으로 분할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내용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하므로 1건의 단일사업으로 발주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 ■■■■■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단일사업으로 발주되어야 할 사업이 분할 발주되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정산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 3. 10. ‘○○○○○○ ○○○ ○○○○○○○○ ○○○○’¹⁵⁾ 보조사업자인 ██████████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천 원을 지원한 후 위 보조사업자가 [별표] “2017년 서귀포시 ○○○ ○○○○○○○ ○ ○○○○ 집행 명세”와 같이 당초 보조사업 내역에 포함된 ▶▶▶▶(사업비 1,600천 원)과 ▲▲▲▲(사업비 1,600천 원)을 운영하지 않고 관내 ◀◀◀◀◀◀ 을 대상으로 한 ◇◇◇◇ 등을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경비 배분을 변경 하면서 사전에 위 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위 보조사업 중 ⊕⊕·⊕⊕⊕⊕, □□□□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에 재 위탁하거나 사업계획에도 없는 □□□□□와 ■■■■■■ 주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8. 3. 14.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 ●●●● ●●●●●●●●●●●●●●’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인 2019. 2. 28.로부터 약 139일이 지난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선으로만 몇 차

15) 서귀포시 ○○○○○○ ○○○○ ○○○○○○○○○ ○○○○○○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르면 총 8개의 세부사업 (보조사업 7, 자체사업 1)에 18,000천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세부사업은 ◆◆◆◆◆, ▶▶▶▶, ▲▲▲▲, ●●●●●, ▲▲▲ ▲▲▲ ▲▲, ▽▽ ▽▽, ⊕⊕·⊕⊕⊕⊕(이상 보조사업), □□ □□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례에 걸쳐 재촉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추진한 보조 사업이 타당성 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조사업 계획신청부터 이행단계까지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①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 ●●●● ●●●●●●●●●●
●●에 대하여 조속히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② 앞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내용 또는 경비 배분 변경,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은 ○○○○○○ ○○○○ ○○○○○○○○ ○○○○○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2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경로당 운영경비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경로당에 운영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이에 따른 지도·감독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시스템 운용규정」 제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의 신청·집행 및 정산 등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¹⁶⁾를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16) 보조금 전용카드는 관리시스템에 사용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시스템에서는 사용 등록된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출된 집행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방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 등과 상호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관내 경로당에 운영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후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할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산서 집행내역 등과 보조금 전용통장의 거래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 등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7.10.~7.16.) 중 위 관서에서 2017년에 관내 23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한 운영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별표] “2017년 한림읍 관내 경로당 운영경비 집행내역 관리시스템 입력 부적정 명세”와 같이 23개 경로당 중 ◆◆◆◆ 경로당 등 11개의 경로당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전용카드 사용 내역이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외 세부 집행내역도 건별로 집행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보조금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집행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 경로당 등 나머지 12개의 경로당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처리 되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건별로 입력하지 않고 한 번에 집행한 것으로 입력하는 등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산서 집행내역과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 집행내역을 정정하도록 요구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¹⁷⁾.

더욱이 2019년에 경로당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23개 경로당 등 23개 경로당에서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경로당 운영경비 세부 집행내역이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자에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경로당 운영경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 및 정산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관내 23개 경로당 임원들은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카드 등록을 하거나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로당 보조금 업무 담당자가 경로당 임원을 대신하여 23개 경로당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주는 실정임을 감안해 달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경로당의 임원들을 대신하여 경로당 보조금 업무 담당자가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연 1회 보조금

17) 2018년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기간 중에 지적을 받고, 경로당 운영경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카드를 등록하게 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집행내역이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에 반영 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조금 관리가 취약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 점검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 문제점 해결이 가능하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운영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23개소의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지침, 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및 세부 집행내역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 운영경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이행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농업 보조금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농가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보조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보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집행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표] 및 [별표] “2018년 농업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이행 명세”와 같이 2018년에 13개 농업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보조사업자 229명)을 추진하면서 위 13개의 보조사업 중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14명)만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을 뿐 나머지 12개 사업(보조사업자 215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짧게는 145일에서 길게는 473일 동안 215명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018년 농업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명세

(단위: 건, 명)

구분	농업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여부			
	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정산검사 이행		정산검사 미 이행	
			사업개수	보조사업자 수	사업 수	보조사업자 수
표선면	13	229	1	14	12	215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농업 보조금 보조사업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2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 보조금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 1]과 같이 제주시 한림읍 △△△ ▶▶▶▶번지에 있는 공유재산인 ○○○○ ○○○○ 건물 및 토지를 2013. 3. 25.부터 2016. 12.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 ㉠㉠㉠㉠(이사장 ▼▼▼)에 ■■■■ ■■■■■■ 등의 용도로 대부한 후 2017. 1. 12.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1] 2013년~2016년 ○○○○○○○○ 건물 대부 명세

건물명	소재지	토지면적 (지목)	건물면적	용도	대부명세		
					대부자	대부기간	대부금액
○○○○ ○○○○	한림읍 △△△ ▶▶▶▶	250㎡ (대)	110.7㎡	●●●●	제주특별자치도㉠㉠㉠㉠㉠㉠ (이사장 ▼▼▼)	2013. 3.25. ~ 2016.12.31.	무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적용)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계약을 해지 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 범위에서 연체료 징수 및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인 ○○○○○○○○○ 건물이 2017. 1. 12.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과 대부계약이 해지 되었으므로 해지 이후 무단 점유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과한 변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재산압류 조치를 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공유재산인 ○○○○○○○○○ 건물을 ■■■■ ●●● ■■■ 번지에 거주하는 ㉸㉸㉸¹⁸⁾이 2017. 1. 13. 이후부터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림]과 같이

18) ㉸㉸㉸㉸㉸㉸ 직원으로 있다가 대부계약 해지 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

더욱이 판매와 물놀이기구 대여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5월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후 같은 해 12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관서에서는 2019년 2월 경 [표 2]와 같이 2018년 1년 동안 무단점유를 한 행위에 대해 변상금을 4회 분납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4회 분납분 중 1회 분납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3회 분납분 4,476천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재산조회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 건물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 및 납부 명세

(단위: 천 원)

대상자	주소	무단점유 내용	압류여부	무단점유 기간	부과일	변상금 ^주	납부여부
㉸㉸㉸	서귀포시 ○○○ ■■■	○○○○○○○○○(△△△ ▶▶▶▶) 토지 250㎡, 건물 110.7㎡ (더욱이 판매, 물놀이기구 대여, 탈의장 운영 등)	미 압류	2017.1.13.~5. 10.	2017. 5.	1,710	납부
				2017.5.11.~12.31.	2018. 1.~9.	3,378	납부
				2018.1.1.~12.31.	2019. 2.	1분납 1,492	납부
					2019. 3.	2분납 1,492	미납부
					2019. 4.	3분납 1,492	미납부
2019. 5.	4분납 1,498	미납부					

주: 최초 부과금액 기준임(가산세 및 분납이자 제외)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2019년 7월 감사기간 중에 무단점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이 ○○○○○○○○○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만 할 뿐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유재산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점유되었는데도 변상금 부과

조치만 함으로써 무단 점유한 자가 변상금만 납부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등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원상복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가 체납한 변상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매년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보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영구시설물 설치 및 불법 무단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및 불법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7. 16.) 중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의 항공사진 및 위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 현황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에 거주하는 ○○○의 경우 2005년 1월경 본인 소유의 같은 읍 ▲▲▲ □□□□번지 토지와 인접토지인 같은 읍 ▲▲▲ ●●●●번지(임야) 공유재산 154㎡를 위 관서로부터 대부받아 농사용 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후 2014년 12월 위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등 [별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 명세” 및 [그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현황 및 현장 사진”과 같이 공유재산 토지 총 17필지를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대부 받지

않거나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8년¹⁹⁾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위 17필지 중 제주시 한림읍 ■■■ ▽▽▽▽-▽번지의 공유재산만 2006. 5. 29.부터 2009. 5. 28.까지 감귤 과수원 용도로 무단 점유한²⁰⁾ 것으로 실태 조사서에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위 17건의 무단 점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현장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보완하여 앞으로 공유재산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영구시설물 설치 등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 17필지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상복구 명령 및

19)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는 2008년부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함

20) 3년간 무단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287,960원이 부과되었음

변상금 부과 등의 시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 ■■■■■■■■■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 ■■■■■■■■■으로 사용되고 있는 △△△ ▲▲▲-▲의 2필지²¹⁾의 토지를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 ■■■■■■■■■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구 북제주군에서 생활권 체육시설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위 공유재산을 [표 1]과 같이 ■■■■■■■■■으로 조성하고²²⁾, ○○○○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잔디 깎기 등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표] ○○○ ■■■■■■■■■ 조성사업 현황

(단위: 천 원, m²)

21) 한림읍 △△△ ○○○-○, 한림읍 △△△ ○○○-○

22) 서부 환경시설관리소(매립장) 유치(2002년도)에 따라 마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부지 토지 중 △△△ ○○○-○번지는 조성 당시 △△△ 산●●-●번지로 무상 대부된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였다가 2003년도에 북제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사업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	조성 면적	주요시설
□□□ ▣▣▣▣▣ 조성사업	한림읍 △△△ ⓪⓪⓪-⓪외 2필지	2001. 12. 27. ~ 2002. 3. 9.	123,435	7,140	■ ■ ■ ■ 1면, 전석쌓기 150m, 휨스 130m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등을 관리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²³⁾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⁴⁾

따라서 공용 용도의 행정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3) 2005. 8.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2006. 1. 1.시행)되면서 기존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었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 마을운동장 조성 당시에는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및 구 「북제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2006. 4.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통합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 위탁 사항을 처리하였음

24) □□□ ▣▣▣▣▣ 조성 당시에는 구 「북제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007. 4.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통합되기 전의 것)가 제정·시행되고 있었음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7. 16.) 중 ○○○ ㉠㉠㉠㉠㉠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02. 3. 9. ○○○ ㉠㉠㉠㉠㉠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당시 구 북제주군(총무과)으로부터 같은 해 3. 21. 위 재산에 대한 분임 재산관리관(한림읍장)으로 지정²⁵⁾받으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나서 위 관서에서는 2002. 3. 26. ○○○○을 위 행정재산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기 위해 “○○○ ㉠㉠㉠㉠㉠ 관리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공문²⁶⁾을 ○○○○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을 뿐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별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으로 하여금 위 행정재산에 대한 환경정비와 사용료 징수²⁷⁾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²⁸⁾

그 결과 행정재산이 위탁관리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채 민간위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사용료 등도 수탁자가 임의대로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2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산관리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문화체육사업부), 제주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어 관리되다가 20116. 5. 6. 제주시 한림읍에서 다시 관리하게 됨

26) 한림 82120-1444(2002.3.26.)호, “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임

27) 현재 마을 청년회에서 자체 부담으로 전기·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잔디 깎기 등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며, 마을 이외에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1회 100천 원~200천 원의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받고 있으나 이용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함(감사기간 중 ○○○ ㉠㉠㉠㉠ ∇∇∇과 전화면담으로 확인)

28) ㉠㉠㉠ 조성 이후에도 시설 개보수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와 한림읍에서 육상트랙 포장 등 5차례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임

【일련번호: 18】

감사위원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무단 점유 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관내 ○○○○○○ ▲▲-▲▲번지에 주소지를 둔 ㉹㉹㉹²⁹⁾로부터 위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면 ◇◇◇ ●●●●-●번지 공유재산(토지)에 대해 대부 신청을 받아 2016. 7. 27. [표 1]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신규 대부계약을 맺은 후 2018. 12. 4. 위 계약을 갱신처리 하였다.

[표 1]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

(단위: m²)

위치	지목	지적 면적	대부자		대부 계약일	대부 면적	대부목적	대부기간	비고
			주소	성명					
◇◇◇ ●●●●-●	임야	6,101	표선면 ○○○○○ ▲▲-▲▲	㉹㉹㉹	2016. 7.27.	2,970	경작지	2016. 8. 1.~2018.12.31.	신규
					2018.12. 4.	2,970	경작지	2019. 1. 1.~2023.12.31.	갱신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29) 대부받은 토지의 인접 토지인 표선면 ●●●● ○○○○○의 토지주로 2016. 4. 2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전에는 ●●●●이 2006. 3. 29.부터 ㉹㉹㉹가 취득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음

한편, 위 관서에서 2016. 7. 27. 위 ~~목록~~와 수의계약으로 신규 대부 계약을 맺은 위 공유재산(토지)은 1961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2016. 7. 15.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이후부터 매년 실태조사³⁰⁾가 이루어졌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계속하여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2017. 10. 31. 세정담당관) 및 서귀포시의 「공유재산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특별 관리지침(안)」³¹⁾(2016. 9. 1.)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이 설치된 경우 재 대부 여부 및 계약방법 등은 민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 후 결정하되 대부 계약서에 기 식재(설치)된 입목 및 다년생 작물은 이전(철거)계획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수목 등의 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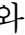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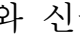
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31) 서귀포시에서는 2019. 5. 23.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리지침이 도와 중복된 내용임을 들어 폐지하였음

재배용으로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목이식 등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미리 고지하여 3년이 경과된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대부자가 공유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 대부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이 식재(설치)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야 하며, 재 대부를 할 때에는 민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 대부 여부를 결정하되 영구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 이전(철거) 등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공유재산 대부 만료에 따른 다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6. 7. 26. 와 공유재산인 표선면  번지 임야 6,101㎡ 중 2,970㎡에 대해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해당 공유재산(토지) 내 [그림]과 같이 일부 면적에 영구시설물인 아스콘 포장³²⁾이 되어 있고, 창고 2동 설치 및 다년생 작물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 일부가 무단 점유되어 있어³²⁾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고, 무단 점유 기간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7. 27. 위 와 신규 대부계약(2016. 8. 1.~ 2018. 12. 31.)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관서에서는 위 와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³³⁾

32) 감귤나무 식재(1,590㎡)는 2006년도부터, 하우스 창고(2동·102㎡)는 1동이 2011년부터, 이후 추가된 1동은 2017년부터, 아스콘 포장(86㎡)은 2013년부터 각각 식재 및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공간정보포털 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였음(면적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공간정보포털 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개산 면적임)

33) 2016년(2016. 10. 12.), 2017년(2017. 6. 13.), 2018년(2018. 8. 10.)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당 공유재산이 대부 목적인 경작지 용도가 아닌 다년생 작물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 알 수 있는데도 경작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 하였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8. 11. 22. 위 ㉸㉸㉸로부터 기 대부 중인 공유재산을 경작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재 대부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면서도 해당 공유재산에 다년생 작물인 감귤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 대부 여부 결정 시 서귀포시가 2016. 9. 1. 마련한 「공유재산 특정감사 처분에 따른 특별 관리지침」에 따라 민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영구 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 이전(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재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4. 2018년도 계약기간 만료 공유재산 대부 신청 검토결과에 “경작지 이용, 재 대부 5년”이라고 기재한 후 위 ㉸㉸㉸와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5년간 공유재산 재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공유재산이 대부계약 만료 시 영구시설물 및 다년생 작물 이전(철거)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대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 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① 공유재산 내 무단으로 창고 2동 설치 및 아스콘 포장을 한 대부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을 하거나 변경계약 등을 통해 영구시설물 등 철거에 따른 철거 비용 예치 또는 다년생 작물을 이전(철거)한다는 내용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② 앞으로 공유재산을 재 대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 대부한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이나 다년생 작물 등이 설치 또는 식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공유재산 대부 만료에 따른 다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서귀포시장은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2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감 사 위 원 회

권 고

제 목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세부기준 운용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회계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회계과³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 10. 26.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³⁵을 수립하고, 일반재산 대부에 따른 수의계약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³⁶(이하 “공유재산 조례”라 한다)

34) 2016. 10. 26.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수립 당시 담당 부서는 세정담당관이었음

35) 2016. 8. 24. 수립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같은 해 2016. 10. 26.에 수립되었으며, 2017. 10. 31. 한 차례 변경되었음

제21조의5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26가지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일반재산 대부에 따른 수의계약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정한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하고, 위 수의계약 세부 운영기준에 새로운 유형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를 우선 상위 규정인 조례에 반영한 후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6. 10. 26.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수립한 후 2017. 10. 31. 위 지침을 변경 수립³⁷⁾하면서 “” 공유재산(일반재산)은 제주시 한림읍장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 자체계획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향후 공유재산 조례에 소급 적용하여 반영하겠다는 사항을 포함한 후 변경된 대부지침을 한림읍 등 전 부서(행정시, 읍·면·동 포함)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주시 한림읍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 ~7. 16.) 중 위 변경된 대부지침이 시행된 이후 한림읍에서 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실태와 위 변경된 대부지침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림읍에서는 위 변경된 “제주형

3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아 공유재산 조례로 정하고 있음

37) 2017. 11. 1.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공유재산 대부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일반입찰³⁸⁾ 방식으로 대부계약자를 선정하다가 위 변경된 대부지침이 시행된 2017. 11. 1.부터는 상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되게 수립되어 있는 위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³⁹⁾으로만 대부계약자를 선정하는 등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표]와 같이 [표] 내 14개의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신규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표] 공유재산(일반재산) 신규 수의계약 대부 명세

연번	계약물건	계약자성명	계약일자 ^{주)}	대부기간
1	[표] [표]호	[표]	2017.12.13.	2018. 1. 1.~2022.12.31.
2	[표] [표]호	[표]	2018. 1. 9.	2018. 1.15.~2018.12.31.
3	[표] [표]호	(주)[표]	2018.12.21.	2019. 1. 1.~2023.12.31.
4	[표] [표]호	(주)[표]	2018.12.21.	2019. 1. 1.~2023.12.31.
5	[표] [표]호	[표]	2018.12.21.	2019. 1. 1.~2023.12.31.
6	[표] [표]호	[표]	2018.12.21.	2019. 1. 1.~2023.12.31.
7	[표] [표]호	[표]	2019. 1. 9.	2019. 1.15.~2023.12.31.
8	[표] [표]호	[표]	2019. 1.14.	2019. 1.15.~2023.12.31.
9	[표] [표]호	[표]	2019. 2. 7.	2019. 2.20.~2023.12.31.
10	[표] [표]호	[표]	2019. 2. 7.	2019. 2.20.~2023.12.31.
11	[표] [표]호	[표]	2019. 3.19.	2019. 3.22.~2023.12.31.
12	[표] [표]호	[표]	2019. 4.12.	2019. 4.12.~2023.12.31.
13	[표] [표]호	[표]	2019. 4.12.	2019. 4.12.~2023.12.31.
14	[표] [표]호	[표]	2019. 4.18.	2019. 4.22.~2023.12.31.

주: 대부계약 체결 공문 내부결재일을 적용하였음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변경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기로 한 [표]의 수의계약 허용에 관한 사항을 2019년 7월 감사일까지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38)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1인 이상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임

39) 2017년 11월부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대부계약자를 선정해 오다가 2019년 3월부터는 2인 이상 신청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로 대부계약자를 선정하였음

그 결과 일반입찰 방식으로 대부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상위 규정을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2016. 10. 26.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최초 수립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입주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자 2017. 10. 31. 위 지침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자에 한해 갱신계약을 2022년까지(5년)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지 신규 계약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침 하단에 법령에 관련 규정 있는 경우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선 시행 후 조례에 소급적용으로 반영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기재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2018.12.11.)되어 □□□□□□□□와 같이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위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공유재산 조례 개정이 무의미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수립한 변경된 지침에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가능”이라고 명시됨에 따라 실제 한림읍에서 수의계약으로 □□□□□□□□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신규와 갱신 계약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우선 시행 후 조례에 소급적용으로 반영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 계약자에 대한

수의계약의 갱신계약만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8. 12. 11. 신설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의 내용은 대부기간, 갱신횟수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을 뿐 대부계약자 선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 선정방식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내용 중 상위 조례 등을 위반하고 있는 □□□□□□□□의 수의계약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 조례 등에 반영 또는 지침에서 삭제하는 등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주민복지과의 3개부서⁴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관내 주민에게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40)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⁴¹⁾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주민 중 사회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홍보하여 해당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이와 같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7.10.~7.16.) 중 위 관서에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등 사회보장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부서⁴²⁾로부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홍보 협조 요청을 받은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 안내·홍보 등을 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24개 복지 서비스 사업 안내·홍보 명세”와 같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감면 사업⁴³⁾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1개 사업은 이장 및 자생단체 회의와 연계하여 홍보하거나 마을단위 최 일선 주민접점시설인 리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하지

4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42) 기초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3) 2018.7.13.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을 월 11천 원 감면해주는 제도임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12개 사업 중 희망 키움 통장Ⅱ 가입 사업⁴⁴⁾은 지원 대상자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가구이므로 관내 전체 차상위 계층 가구에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도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5가구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종류가 많고,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개별적인 안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유선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 자체사업 지원”,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보장자격만 갖추면 신청대상이 되거나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4) 기초주거·기초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 이상 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때 정부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저축해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총액으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사업임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사회보장급여제도 중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게 적기에 홍보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서비스 안내·홍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시장은 사회보장급여제도 중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해당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적기에 홍보하는 등 사회보장 급여제도 홍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21】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미흡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주민복지과외 2개부서⁴⁵⁾)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관내 주민에게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대상에서

45)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누락되지 않게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⁴⁶⁾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주민 중 사회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홍보하여 해당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이와 같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7.17.~7.23.) 중 위 관서에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등 사회보장급여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부서⁴⁷⁾로부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홍보 협조 요청을 받은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 안내·홍보 등을 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30개 복지 서비스 사업 안내·홍보 명세”와 같이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1개 사업은 이장 및 자생단체 회의와 연계하여 홍보하거나 마을단위 최 일선 주민접점시설인 리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하지 않고

4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47)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복지서비스 등의 안내 및 홍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앞으로 사회보장급여제도 중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게 적기에 홍보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안내·홍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귀포시장은 사회보장급여제도 중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해당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적기에 홍보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제도 홍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22】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반기별로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하는 등 급여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미약)자⁴⁸⁾에 대하여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고,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 관리 점검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4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자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 가구임

또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부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 급여 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급여 관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해서는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여 반기별 급여 관리 점검을 실시하거나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 급여 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급여 관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표] 및 [별표]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 관리자 미 지정 및 급여 관리 점검 대상 제외 명세”와 같이 관내 복지급여 수급자 445명을 관리하면서 급여 관리가 필요한 77명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가운데 급여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급여 관리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42명의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 반기별 급여 관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급여 관리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명세

(단위: 명)

구분	생계급여수급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 관리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		급여 관리자 미 지정 ^{주3)} 및 급여 관리 점검 제외
			급여 관리 점검 대상 ^{주1)}	급여 관리 점검 제외 대상 ^{주2)}	
한림읍	445	77	13	22	42

- 주 1.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 하는 직계존속,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사회복지기관 직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이웃 등인 경우
2.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위탁부모인 경우
3. 수급자 스스로 급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 대한 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가 실제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급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의사무능력(미약)자 42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현장 확인·점검을 하고, 급여 관리·사용 능력여부를 판단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개인급수공사와 옥내누수에 따른 사용량 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화 등 정보화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급수공사를 승인 받은 자는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17-156호) 「별지」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카드, 2D, 3D)에 기본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주요 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급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따른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 도면에 대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별표 1] “제주시 한림읍 상수도 급수공사 명세”와 같이 2017. 8. 18. 제주시 한림읍 ○○○ ▲▲▲▲번지에 있는 (주)○○○○○○○○에서 신청한 급수공사 외 114건에 대해 승인한 후 2019년 7월 감사일 기준으로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해당 공사에 따른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 도면을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급수공사에 따른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이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 관리되지 않아 도시기반 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옥내 노후급수관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⁴⁹⁾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전용급수설비⁵⁰⁾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건물⁵¹⁾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통하여 급수설비의 비내식성⁵²⁾ 자재(아연도 강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가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수도사용자에게 해당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되거나 용자가 된다는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별표 2] “제주시 한림읍 옥내누수 사용료 조정 명세”와 같이 제주시 한림읍 ○○○○ ●●●에 주소지를 둔 ㉮㉮㉮ 등 78명으로부터 수도계량기와 가구 사이에 설치된 급수설비에서 옥내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용량 조정 신청을 받고, 사용량을 조정하면서 누수가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에서 발생되어 강관내부의 부식이 우려되므로 수질검사를 권고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갱생·교체

4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함

50)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2) 비내식성(耐蝕性)이란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질 또는 그 정도를 말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량만 조정할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로 설치된 급수관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수질 기준에 맞지 않은 수돗물을 음용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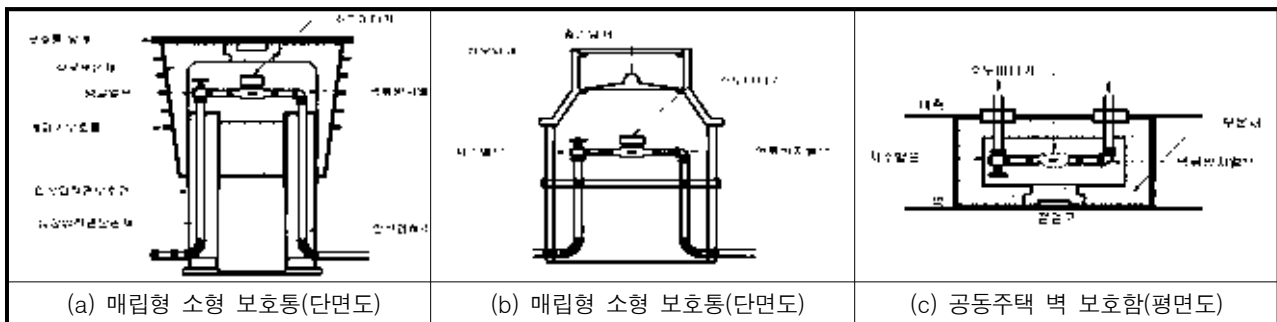
4. 수도계량기 설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별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17-156호) 제2조 관련 [별지]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KCS 57 50 10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에 따르면 구경 15~50mm 수도미터 및 보호통을 설치할 때에는 동절기에 수도미터가 동결 파손되므로 [그림 1]과 같이 발포플라스틱 등과 같은 보온재와 함께 조립된 보호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구경15~50mm 수도미터 및 보호통 설치 모습



자료: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내용 재구성

또한 「수도법」 제14조에 따르면 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도 개인급수 허가에 따른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상수도 개인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그림 2]와 같이 계량기 보호통에 보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채로 시공함으로써 [별표 3] “2018년 한림읍 관내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구입교체 명세”와 같이 2017년 35개소에 설치한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8년 1월에서 2월 겨울철에 동파되어 계량기가 교체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림 2] 한림읍 관내 구경 15~50mm 수도미터 및 보호통 설치 사진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통과된 계량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절기 한파 시 계량기가 통과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인급수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 ① 앞으로 개인급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을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입력 관리 하고, 계량기 설치 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보온재가 들어 있지 않은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② 급수설비의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 부식으로 인해 옥내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을 검사하여 음용기준에 부적합 시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해 세척·갱생·교체를 권고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개인급수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을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사도면에 대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입력 관리 및 계량기 보호통 설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개인급수공사와 옥내누수에 따른 사용량 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화 등 정보화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급수공사를 승인 받은 자는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17-156호) 「별지」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 (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급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따른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 도면에 대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별표 1] “서귀포시 표선면 상수도 급수공사 명세”와 같이 2017. 9. 4. 서귀포시 표선면 ◇◇◇ ◆◆◆◆번지에 주소지를 둔 ㉠㉠㉠이 신청한 급수공사 외 63건에 대해 승인한 후 2019년 7월 감사일 기준으로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해당 공사에 따른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 도면을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급수공사에 따른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이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 관리되지 않아 도시기반 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옥내 노후급수관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⁵³⁾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전용급수설비⁵⁴⁾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건물⁵⁵⁾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를 통하여 급수설비의 비내식성⁵⁶⁾ 자재(아연도 강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가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수도사용자에게 해당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되거나 용자가 된다는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별표 2] “서귀포시 표선면 옥내누수 사용료 조정 명세”와 같이 서귀포시 □□□□ □□번길 ■■에 주소지를 둔 ◀◀◀ 등 72명으로부터 수도계량기와 가구 사이에 설치된 급수설비에서 옥내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용량 조정 신청을 받고 사용량을 조정하면서 누수가 비내식성 자재(아연도 강관)에서 발생되어 강관내부의 부식이 우려되므로 수질검사를 권고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갱생·교체

5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함

54)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6) 비내식성(耐蝕性)이란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질 또는 그 정도를 말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량만 조정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비내식성 자재(아연도 강관)로 설치된 급수관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수질 기준에 맞지 않은 수돗물을 음용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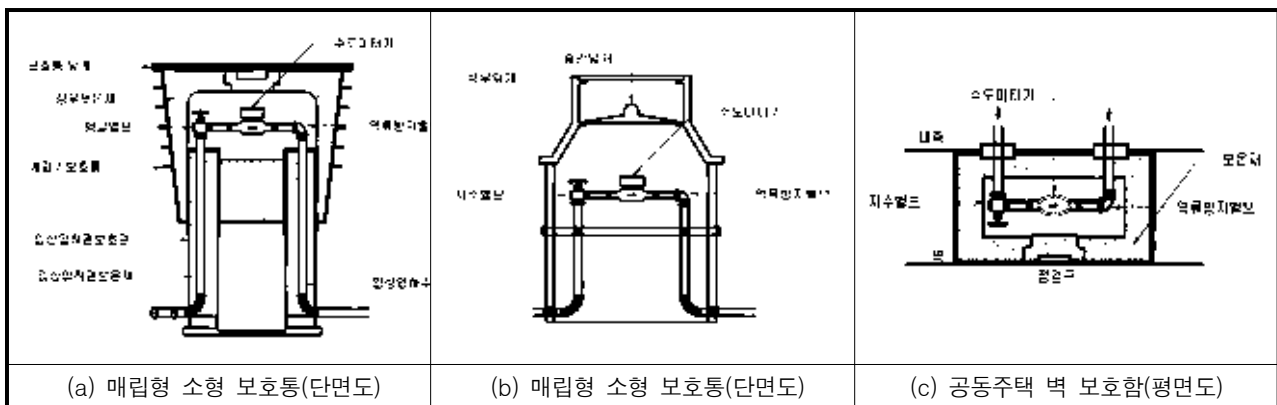
4. 수도계량기 설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별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시 제2017-156호) 제2조 관련 [별지]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KCS 57 50 10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에 따르면 구경 15~50mm 수도미터 및 보호통을 설치할 때에는 동절기에 수도미터가 동결 파손되므로 [그림]과 같이 발포플라스틱 등과 같은 보온재와 함께 조립된 보호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구경15~50mm 수도미터 및 보호통 설치 모습



자료: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 내용 재구성

또한 「수도법」 제14조에 따르면 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도 개인급수 허가에 따른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상수도 개인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계량기 보호통에 보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채로 시공함으로써 [별표 3] “2018년 표선면 관내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구입교체 명세”와 같이 2017년 22개소에 설치한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8년 1월에서 2월 겨울철에 동파되어 계량기가 교체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동파된 계량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절기 한파 시 계량기가 동파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인급수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① 앞으로 개인급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을 기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입력 관리 하고, 계량기 설치 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보온재가 들어 있지 않은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② 급수설비의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 부식으로 인해 옥내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을 검사하며 음용기준에 부적합 시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해 세척·갱생·교체를 권고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개인급수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도면을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사도면에 대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입력 관리 및 계량기 보호통 설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내 각종 시설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처리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 이하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공사의 준공 검사를 마친 경우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현금 또는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 받도록 되어 있고,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보증서로 납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라 현금 또는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건의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처리하면서 [별표]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및 요율산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 받거나 보증서로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 ○○○○ ○○○○ ○○’ 등 6건의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여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하였고, ‘㉠㉠㉠㉠㉠ ㉠㉠㉠ ㉠㉠㉠㉠’ 등 4건의 조경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분의 2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받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이행이 어려워 질 수 있게 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

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앞으로 조경공사를 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비율과 다르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위 신축공사 중 공기연장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등 [표 2]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계약을 맺었고, 이 중 두 차례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표 2] ○○○○○○ △△ 신축공사(건축공사) 설계변경 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 원)

세부공사	설계변경 계약일	설계변경 사유	공사기간 변경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감액
○○○○○○○ △△ 신축공사 (건축공사)	2017. 2.16.	공사기간 연장	당초: 2016.6.24.~2017.2.18. 변경: 2016.6.24.~2017.3.31.	2,628,944	2,628,944	변동 없음
	2017. 3.22.	B.F ^주 인증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변경	당초: 2016.6.24.~2017.3.31. 변경: 2016.6.24.~2017.4.27.	2,628,944	3,187,492	증 558,548
	2017. 5.16.	관급자재 중 창호 구조계산서 확인에 따른 공기연장 및 준공금 정산	당초: 2016.6.24.~2017.4.27. 변경: 2016.6.24.~2017.5.16.	3,187,492	3,297,030	증 109,538

주: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17. 5. 17. ○○○○○○ △△ 신축공사를 준공 처리한 후 △△입구 외부천장에서 녹 발생으로 인해 녹물이 떨어져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유로 2019. 2. 27. [표 3]과 같이 외부천장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3. 18. 준공처리 하였다.

[표 3] ○○○○○○ △△ 입구 외부천장 교체공사 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내용	계약일	계약금액	시공업체	준공일	계약담당자	감독공무원
○○○○○○○ △△ 외부천장 교체공사	기존 경량철장틀 및 데코철망 철거 후 알루미늄 루버로 교체	2019. 2.28.	32,389	(주)◀◀◀◀◀◀ (대표: ◀◀◀)	2019. 3.18.	지방■□■□■□	▽▽▽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2. △△ 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하는 등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 이행 중 설계서⁵⁷⁾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맞게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에 맞게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 소속 공사감독자는 ○○○○ △△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등 관계 서류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표 4]와 같이 ○○○○

5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함

△△입구 외부천장 공사의 자재가 설계도면⁵⁸⁾에는 경량철골천정틀(T-BAR)과 금속천정재인 SST⁵⁹⁾ 50x50 메쉬천정(내풍압고정)으로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금속천정재가 SST 스판드럴 1.5mm로 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난 후 마감공사 과정에서 금속천정재 자재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간에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계약담당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등과 내부논의를 거쳐 금속천정재 자재를 선택하면서 당초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자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상대적으로 내부식성⁶⁰⁾이 약하고 저렴한 분체도장 철재틀(25x50)과 일반 분체도장 메쉬판(90x90)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자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의 설계변경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공하도록 하여 2017. 5. 17. 준공 처리 하였다.

[표 4] ○○○○○○ △△ 입구 외부천장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실제시공 내역 비교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설계도서		내역서		실제시공	
	내역	시공금액	내역	시공금액	내역	시공금액
계		37,145		46,512		15,536
△△입구 천장공사	천장재 (메쉬 스텐망)	25,194	천장재 (SST 스판드럴)	35,530	천장재(용접철망) 분체도장 메쉬	6,072
	알미늄T바	5,814	구조틀M바	4,199	25*20 분체도장 구조틀	5,943
	인건비	6,137	인건비	6,783	인건비	3,521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58) 건축사무소 이즈건축에서 설계한 도면

59)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

60) 녹이 지정된 한계를 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을 말함

그 결과 ○○○○ △△입구 외부천장의 자재가 내부식성이 약한 철재로 시공됨으로써 준공된 지 1년 6개월 만에 외부천장에서 녹 발생으로 녹물이 떨어져 △△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외부천장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신축 △△ 외부천장 공사 하자검사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존속기간 종료 14일 전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완료 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7. 5. 27. 준공처리 된 ○○○○ △△ 신축공사(건축) 중 △△입구 외부천장 공사는 금속 공사와 수장 공사 등 2개의 세부공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표 5]와 같이 되어 있다.

[표 5] ○○○○○○ △△ 신축공사(건축) 하자보수 명세

(단위: 원)

공사명	세부공사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증형태	보증기관
○○○○○○○ △△ 신축공사(건축공사)	금속공사 등 ^{주1)}	983,601,852	29,508,050	2017.5.29.~2019.5.28.	보증서 징구	건설공제조합
	수장공사 등 ^{주2)}	1,434,769,594	43,043,090	2017.5.29.~2018.5.28.	보증서 징구	건설공제조합

주 1. 금속, 조적, 석공사, 토지정공사, 기계설비, 토목, 조경공사

2. 수장, 가설, 타일, 목공사, 미장, 창호, 유리, 도장 공사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 신축 △△ 준공 후 세부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담보 책임기간 종료 14일 전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7. 5. 29. ○○○○○○ △△ 신축공사를 준공처리한 후 위 △△ 입구 외부천장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⁶¹⁾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장공사의 세부공사 중 수장공사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2018. 5. 28.로 종료되는데도 종료 14일 전 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금속공사도 1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3.까지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입구 외부천장에서 녹 발생으로 녹물이 떨어져 △△를 출입

61) △△ 입구 외부천장 공사의 금속공사에 포함된 외부천장틀(경량철골천정틀 T-BAR)의 경우 하자보수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2년(2017. 5. 29.~2019. 5. 28.)이고, 수장공사에 포함된 외부천정재(설계도면 상 SST 50x50 메쉬천정, 물량내역서 상 1.5mm 스판드럴)의 경우에는 1년(2017. 5. 29.~2018. 5. 28.)임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자 2018. 12. 4.이 되어서야 뒤 늦게 위 신축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외부천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신축 △△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절차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실시하는 하자검사에서 하자발생 내용 등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한 후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등 건설 공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 △△ 신축공사(건축)를 준공처리한 후 세부공사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발생 내용이 하자에 해당 되는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하자구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하자여부 및 하자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항 가”의 내용과 같이 2017. 5. 17. ○○○○ △△ 신축공사를 준공 처리한 후 △△ 입구 외부천장에 녹 발생으로 인해 녹물이 떨어져 △△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자 2018. 12. 4. 계약상대자에게 외부천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계약상대자가 외부천장에 녹이 발생한 원인은 해당 공사 시 사용한 자재 문제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자 보수 이행을 거부하자 위 사항이 하자에 해당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거부 사유가 정당한 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귀속조치 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경(날짜 모름) 자체 내부회의만을 거쳐 △△ 입구 외부 천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2019. 2. 27. ○○○○ 외부천장 교체공사(계약 금액 32,492천 원) 계약을 맺은 후 같은 해 3. 18. 준공처리 하였다.

5. 신축 △△ 외부천장 교체공사 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시설비의 경우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간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설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산전용이 불가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9년 1월경(날짜 모름) ○○○○ 신축 △△ 외부천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같은 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단위사업: 면 행정 기능 활성화, 세부사업: △△관리, 편성예산: 20,000천 원)이 부족하자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예산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편성되지 못했다는 사유로 편성목적이 다른 예산과목(단위사업: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세부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편성예산: 1,350,000천 원)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그 결과 당초 시행한 천장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어 천장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천장 교체 공사(계약금액 32,492천 원)가 시행되어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2항, △△ 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 준공 직전 마감 공사를 하면서 뒤늦게 확인이 되었고, 태풍 또는 강풍 시 경량천정 마감재의 탈락,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공사금액으로는 고가의 SST 메쉬천정 자재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등과 논의한 결과 설계도면과 동일한 개방감을 줄 수 있고,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원하는 필로티 공간의 개방감 확보와 바람으로

인한 자재의 훼손 및 부식 방지 목적에도 부합하는 분체도장 칠재들과 분체도장 메쉬판(용접철망)으로 시공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공사감독 및 건축공사 수행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 △△ 신축공사 기간이 19일 연장된 점, 공사금액도 109,538 천 원이 증액된 점, 위 공사가 준공되기 하루 전인 2017. 5. 16.에 세 번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점, 특히 위 관서에서 외부천장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는 아니나 훼손 및 부식방지에 부합하여 시공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게 준공 후 1년 6개월 만에 녹 발생으로 녹물이 떨어져 △△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항, 신축 △△ 외부천장 공사 하자검사 미 이행”과 “4항, 신축 △△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절차 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연 2회 정기하자검사 실시 및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항, 신축 △△ 외부천장 교체공사 예산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 외부천장 녹 발생에 따른 교체 필요성이 2019년 1월에 인지되어 교체공사 예산 90,000 천 원을 같은 해 2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으나 편성까지 이어지지 못하였고,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 민원인의 옷에 묻는 일이 발생하여 천장보수가 시급하였으며, 다가올 장마철에 주민불편이 심해 질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 사업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예산 편성 목적이 서로 다른 점, 시설비는 예산 전용이 불가한 점, 외부천장 교체공사의 필요성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점, 당초 시공된 외부천장에서 녹이 발생한 것이 사용자재 재질의 문제로 하자가 아니라는 시공업체의 주장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자체 판단만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닌 자재 문제로 결론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 ① “2항, △△ 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 △△ 관련 건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여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3항, 신축 △△ 외부천장 공사 하자검사 미 이행”과 “4항, 신축 △△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절차 미 이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③ “5항, 신축 △△ 외부천장 교체공사 예산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시설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채 편성목적이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된 시설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은 ○○○○○○ △△ 신축공사 준공 처리 및 외부천장 교체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6명)에게 각각 훈계(2명) 조치(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통보) 및 주의(4명)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관내 환경 정비 등 일선 현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

계획”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 종료(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0.~7. 16.) 중 위 관서에서 2017년부터 2019년 7월 감사일 사이에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금(14,861,860원)을 전액 지급한 반면, [표]와 같이 2017. 4. 3.부터 2018. 12. 31.까지 1년 8개월 동안 ○○○○ ○○○○ ○○○○ 관리 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재직기간 1년이 도래되는 시점인 2018년 5월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이후부터 8개월 동안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702,39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나머지 7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총 9,779,860원 상당을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명세

(단위: 원)

연번	성명	근로참여 사업 명	근무기간 (근로계약 기간)	퇴직금 지급내역		
				총액(가)	중간정산액(나)	미지급액 (가-나)
합계	7명					9,779,860
1	○○○	○○○○ ○○○○ ○○○○○	2017. 4. 3.~2018.12.31.	2,054,500	1,352,110 ^{주1)}	702,390
2	■□■	○○○ ○○○○ ○○○	2017. 1. 1.~2018. 6.30.	3,809,580	2,521,970 ^{주2)}	1,287,610
3	▮▮▮	○○○ ○○○○ ○○○	2017. 1. 1.~2018. 6.30.	3,809,580	2,521,970 ^{주3)}	1,287,610
4	▯▯▯▯	△△△ △△△△△ △△△△ △△	2017. 1. 1.~2018.12.31.	3,831,750	2,020,800 ^{주4)}	1,810,950
5	▯▯▯▯	▮▮▮▮▮▮ ▮▮▮▮▮	2018. 1. 1.~2018.12.31.	1,358,210	-	1,358,210
6	▮▮▮	▯▯▯▯▯▯ ▯▯▯▯▯	2018. 1. 2.~2018.12.31. ^{주4)}	1,435,530	-	1,435,530
7	▮▮▮	▯▯▯▯▯▯ ▯▯▯▯▯	2018. 2. 1.~2019. 1.31.	1,897,560	-	1,897,560

- 주 1. 2017년 5월분 보수 지급 시 1년(2017. 4. 3.~2018. 4. 2.)분 퇴직금 1,352,11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함
- 주 2. 2017년 12월분 보수 지급 시 1년(2017. 1. 1. ~ 12. 31.)분 퇴직금 2,521,97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함
- 주 3. 2017년 12월분 보수 지급 시 1년(2017. 1. 1. ~ 12. 31.) 분 퇴직금 2,521,97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함

4. 퇴직금 지급조건인 계속 근무기간이 1년에서 1일이 부족하지만 1. 1.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공직노사협력팀)에서는 2018. 1월경 내부 회의를 거쳐 근로기간이 1.2 ~ 12.31.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시행하고 있음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퇴직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업무를 철저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7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계 9,779,860원을 지급 조치하고,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8】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사후 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총무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농지법」 등에 따라 관내 농지의 불법전용 여부가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표 1]과 같이 제주시 한림읍 ○○○ ▲▲▲▲번지 농지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17건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 명세(2016년~2018년)

(단위: 건)

적발연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적발건수	17	7	7	3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매년 수립하여 전 부서(행정시, 읍면동 포함)에 통보한 “농지불법전용 행정시 간 교차단속 계획”에 따르면 농지 불법전용을 적발한 경우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표 2]와 같이 17건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중 한림읍 □□□ △△△△-△번지 농지 등 6건만 원상회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건은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채 계속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6년~2018년)

(단위: m²)

적발 연도	지목	지번	지적 면적	불법전용 면적	전용내용	후속조치		현장 확인결과
						사전통지	원상회복명령	
2016	전	제주시 한림읍 □□□ 1518	896	896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504	731	731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689	248	248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692	929	929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694-8	614	614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426-2	1,250	1,250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694-2	612	612	불법주차장	○	-	원상회복 완료
2017	전	제주시 한림읍 ■■■ 854-6	112	112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994	324	324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68	519	519	불법야적	○	×	불법야적
	전	제주시 한림읍 ◆◆◆ 1888	704	704	불법주차장	-	-	자진 원상회복
	전	제주시 한림읍 ◆◆◆ 1857	445	445	불법주차장	-	-	자진 원상회복
	전	제주시 한림읍 ●●● 180	407	407	불법주차장	○	×	불법주차장 조성
	전	제주시 한림읍 ●●● 180-1	516	516	불법주차장	○	×	불법주차장 조성
2018	전	제주시 한림읍 ○○○ 285-3	1,000	1,000	창고	○	-	원상회복 완료
	전	제주시 한림읍 ◆◆◆ 702-11	1,097	1,097	불법야적	○	-	원상회복 완료
	전	제주시 한림읍 ●●● 25	1,144	300	무단형질 변경	○	-	원상회복 완료

자료: 제주시 한림읍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농지전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향후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불법으로 전용행위가 유지되고 있는 농지 11건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후속조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4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감사위원회

시정요구·통보

제 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제주시(건축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46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임 받아 관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적발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62) 별표 4에 따라 읍·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

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제주시의 경우 주택과)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⁶³⁾에 입력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제주시(주택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주택과)에서는 위 관서에서 위반 건축물 적발 시 위반내용을 통보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내용이 통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위 관서에서 직접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시하는 권한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63)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사용승인) → 철거 등] 업무 전반을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임

가. 제주시 한림읍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7.~7. 23.) 중 위 관서의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13년 이후 위반 건축물 목록만 단순히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위반 건축물 목록은 인수·인계 미흡 등의 사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는 2003년 이전 위반 건축물 목록에 대해서만 입력⁶⁴⁾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을 뿐 2004년 이후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위반 건축물 목록은 입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을 제주시(주택과)에 통보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나. 제주시(주택과)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한림읍에서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제대로 통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한림읍에서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이 아닌 일반 PC에서 엑셀파일로 이루어져 해당파일 오류 발생 시 위반 건축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표시여부가 관리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 매매 시 위반내용을 알 수 없는 매수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64) 읍·면 담당자에게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관계기관 의견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엑셀파일이 아닌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위반내용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제주시(주택과)에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시(주택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권한 중 위반내용 표시 권한만 별도로 분리할 수 없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의 생성, 정정, 말소 등 변경에 따른 전체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처리에 큰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읍·면에서 위반 건축물 확인 즉시 제주시(주택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권한 중 위반내용 표시 권한만 분리하여 읍·면에 위임할 수 있게 위 시스템 보급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시 한림읍장은 건축행정시스템에 작성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조속히 작성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위반 건축물의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가 안 된 경우 제주시(주택과)에 통보하여 위반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위반 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에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반내용을 제주시(주택과)에 통보하지 않아 그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제주시장은 읍·면에서 위반건축물 적발 시 위반내용이 통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읍면으로부터 그 위반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건축물대장에 입력하거나 읍·면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위반내용을 해당 건축물대장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부처에 기능 개선을 건의하는 등 위반건축물의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30】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건축과)

내 용

1. 업무 개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46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임 받아 관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적발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65) 별표 4에 따라 읍·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

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서귀포시의 경우 건축과)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는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⁶⁶⁾에 입력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서귀포시(건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귀포시(건축과)에서는 위 관서에서 위반 건축물 적발 시 위반내용을 통보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내용이 통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위 관서에서 직접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시하는 권한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66)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사용승인) → 철거 등] 업무 전반을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임

가.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19. 7. 17.~7. 23.) 중 위 관서의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2017년 이후 위반 건축물 목록만 단순히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관리하고 있고, 2017년 이전 위반 건축물 목록은 인수·인계 미흡 등의 사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는 2002년 이전 위반 건축물 목록에 대해서만 입력⁶⁷⁾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을 뿐 2002년 이후부터 2019년 7월 감사일까지 위반 건축물 목록은 입력하지 않고 있다.

실제 위 관서에서는 2006년에 적발한 위반 건축물(건축주: ○○○)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다가 2018년에 신고를 받고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을 서귀포시(건축과)에 통보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나. 서귀포시(건축과)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표선면에서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제대로 통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선면에서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67) 읍·면 담당자에게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그 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이 아닌 일반 PC에서 엑셀파일로 이루어져 해당파일 오류 발생 시 위반 건축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표시여부가 관리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 매매 시 위반내용을 알 수 없는 매수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엑셀파일이 아닌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위반내용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건축과)에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귀포시(건축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권한 중 위반내용 표시 권한만 별도로 분리할 수 없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의 생성, 정정, 말소 등 변경에 따른 전체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처리에 큰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읍·면에서 위반 건축물 확인 즉시 서귀포시(건축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권한 중 위반내용 표시 권한만 분리하여 읍면에 위임할 수 있게 위 시스템 보급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 표선면장은 건축행정시스템에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조속히 작성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조치를 하고, 위반 건축물의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가 안 된 경우 서귀포시(건축과)에 통보하여 위반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위반 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에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반내용을 서귀포시(건축과)에 통보하지 않아 그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서귀포시장은 읍면에서 위반건축물 적발 시 위반내용이 통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 읍면으로부터 그 위반내용을 통보받아 해당 건축물대장에 입력하거나 읍면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위반내용을 해당 건축물대장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부처에 기능 개선을 건의하는 등 위반 건축물의 위반내용이 해당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31】

감 사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농·어촌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

관계기관(부서) 서귀포시 표선면

내 용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도심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를 육성하여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접근기회 확대 및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위 관서 관내 문화예술동아리는 6개에 불과할 정도로 도심 지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여 전문 강사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 활동분야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지역 주민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관내 문화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아리의 활동영역을 넓혀 줌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표선면 문화예술티움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위 관서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비로 20,000천 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표 1]과 같이 2017년의 경우 ‘가시리 난타 동아리’ 등 관내 8개의 문화예술동아리를 임의 선정하여 동아리별로 20회의 범위 내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게 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지원 대상 동아리 선정방식을 임의 선정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응모한 10개 동아리 중 심사를 거쳐 7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표회도 경연대회로 변경하고, 참가 대상 범위도 지원 대상 동아리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표 1] 연도별 문화예술티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 천 원)

연도별	문화예술동아리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추진실적		
	접수결과 (동아리 수)	선정결과			행사 일시	행사명(장소)	참가 동아리 수
		선정방식	동아리 수				
합계			22		5회	5건	28
2017	-	위원회 결정	8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8개 팀별 각 20회)	7. 14.	제1회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표선면사무소)	6
					12.15.	제2회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표선면사무소)	5
2018	10	위원회 심사	7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7개 팀별 각 20회)	7. 13.	제1회 문화예술동아리 경진대회 (표선면사무소)	5
					11.23.	제2회 문화예술동아리 경진대회 (표선면사무소)	5
2019	14	위원회 심사	7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6. 19.	제3회 문화예술동아리 경진대회 (표선면사무소)	7

연도별	문화예술동아리 모집 및 선정			지원내용 (7개 팀별 각 20회)	추진실적		
	접수결과 (동아리 수)	선정결과			행사 일시	행사명(장소)	참가 동아리 수
		선정방식	동아리 수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6개에 불과하던 문화예술동아리가 20여 개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 동아리는 [표 2]와 같이 전문 강사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독자적으로 외부 공연을 하거나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 문화예술티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 성과

(단위: 개)

연도별	신규 동아리 수	외부 공연 동아리 수	지역 축제(행사) 참가 동아리 수
합계	15	6	8
2017	2	1	3
2018	6	4	2
2019	7	2	3

자료: 서귀포시 표선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동아리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귀포시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